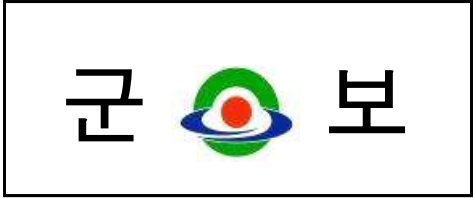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48호 2025. 9. 15.(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28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 공고 제2025-1286호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예 천



1. 조 례 명 :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예천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영양관리사업 및 참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
-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8조)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 sy072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3) 팩스 : 054-650-80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전화 : 054-650-80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천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2. 영양·식생활 인식 개선 등 동기부여를 위한 홍보 물품

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포상(지역화폐, 물품 등)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6조의 영양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

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
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
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영양사업 추진 및 참여자 지원 등에 따른 비용 발생
(안 제6조,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보건소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안남기(054-650-6470)